

[중앙대학교 사범대학 선거 시행 세칙]

1장 총칙

제 1조 (선거 시행세칙의 목적)

중앙대학교 사범대 선거 시행세칙(이하 세칙)은 학생회선거를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선거의 원칙)

- 1) 선거는 전대 학생회의 사업과 활동을 발전적으로 평가, 지향하여 학우들을 학생회의 주인으로 세워내는 과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 2) 모든 학생회의 회원은 선거를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 3조 (적용범위)

- 1) 본 세칙은 사범대 학생회장 선거 (이하 사범대 선거)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2) 본 세칙에 없는 사항은 사범대 선거관리 위원회 (이하 선관위)의 의결로 시행한다.

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4조 (선거권)

- 1) 선거 유권자는 현재 재학 중인 본 회원 모두로 한다. (단, 매년 2월 졸업 예정자는 제외한다.)
- 2) 선관위는 선거일 5일 전에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 선거인 명부를 작성일 당일부터 회원(재학생)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선거 유권자는 선거인 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을 때 선관위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5조 (피선거권)

- 1) 본 회원(재학생)으로 4차 학기 이상을 등록한 자
- 2) 각 과 회원 1/4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 3) 추천은 모든 후보자에게 1회씩 가능하다

6조 (후보자 등록)

사범대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룰 미팅 30분 전까지 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재학 증명서
- 2) 5조 2항에 의한 추천서
- 3) 대표 참관인, 투표 참관인 명단과 재학 증명서 (투표 참관인은 재적 증명서 가능)
- 4) 출마 소견서, 후보 약력 소개서

- 5) 후보 사진 (후보자 공고용 사진, 디지털 파일도 무방)
- 6) 선거운동원 명단과 재학 및 재적증명서 (대표참관인 및 투표 참관인과 겹칠 경우 1매만 제출)

7조 (입후보자 자격심사)

- 1) 선관위는 등록마감 후 5조에 의거 입후보자의 자격심사를 해야 한다. 자격심사에 통과하지 못할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해야 한다.
- 2) 입후보자가 6조의 구비서류를 등록마감 시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하면 등록을 거부해야 한다.

8조 (사퇴규정)

- 1) 선관위와 학교 간부 및 대표자 중 선거 운동을 하려는 자는 추천 시작 사흘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
- 2) 선관위는 입후보를 제외하고 사퇴할 수 없다.
- 3) 사퇴하려는 자는 사퇴서와 사유서 등 선관위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9조 (입후보자 최종 등록 : 를 미팅)

선관위는 등록 마감 후 입후보자 최종 등록을 위한 모임을 소집하여야 하며 역할을 다음 각 호의 규정으로 한다. (단, 참여자는 입후보자와 대표 참관인으로 하며, 불참 시 선관위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 1) 등록구비 서류 확인 및 최종 등록 결정
- 2) 선거 시행 세칙 검토
- 3) 기타 선거에 필요한 제반의 사항
- 4) 경선 시, 선거운동에서 사용할 기호 결정(다수의 추천을 받은 후보부터 기호를 결정한다.)

3장 선거 관리 위원회

10조 (위상)

선관위는 사범대 학생회장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제반의 업무를 세칙에 의거하여 집행, 조정할 것을 운영위원회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선거에 있어서의 최고 의결 기구이다.

11조 (목적)

선관위는 사범대 학생회장 선거를 공정하고 민주적, 대중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조 (업무 및 권한)

- 1) 선관위는 사범대 학생회장 선거에서 공정성, 민주성, 대중성을 구현할 제반 사업 및 활동을 기획, 집행한다.
- 2) 선관위는 사범대 학생회장 선거를 학우들의 관심 속에서 후보와 그 후보의 정책과 공약이 효율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장을 만들기 위한 제반활동을 전개한다
- 3) 선관위는 세칙 및 각 선거운동 본부(이하 선본)와 합의한 방식에 의거하여 선거에 관련한 집행을 감시하고 이를 시행치 않을 시 사안의 경중에 따라 경고 등을 포함한 가중 제재 조치를 각 선본에 취할 수 있다. 또한 공정한 선거를 해치는 제반 선거 운동 사례를 적발하여 타당한 징계를 가할 수 있다.
- 4) 선관위는 선거 후 자동 해체된다.

13조 (구성)

- 1) 선관위의 위원장은 사범대 학생회장으로 한다.(부학생회장이 있을 시, 부위원장을 부학생회장으로 한다.)

- 2) 선관위는 사범대 운영위원회 (이하 사운위) 전원(사퇴 시 직선 대표자의 권한 및 직무대행)으로 구성한다.
- 3) 필요시 선관위 산하에 필요한 집행국을 둘 수 있다.

14조 (소집, 개회 및 의결)

- 1) 선관위 제반 일상 업무 처리와 후보자의 이의제기 등이 있을 시 선관위원장, 선관위 1/3이상의 요구로 소집할 수 있다. 선관위원 과반수 출석을 확인한 후 즉시 개회한다.
- 2) 의결을 요하는 시안에 대한 의결은 선관위원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무효표 판정은 과반수 출석과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5조 (학과 선거 관리 위원회)

- 1) 학과 선거 관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각 학과 학생회에서 담당한다.
- 2) 학과 선거 관리 위원회는 피선거권을 가지지 아니하며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없다. 단, 사퇴한 이후에는 선거 운동에 참여할 수 있다.

4장 선거

-1절 통칙-

16조 (선거일)

- 1) 사범대 선거는 매 학년도 11월 중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 2) 선거일은 사운위에서 결정한다.
- 3) 이외의 구체적인 선거일정은 선관위에서 정한다.
- 4) 2항의 일정은 사운위에서 후보 등록 마감 1주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2절 선거운동-

17조 (선거운동)

- 1) 선거운동이라 함은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한 제반 행위로 규정한다. (단, 선거에 관한 일반적인 의견 개진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
- 2) 추천 기간 중 아래와 같은 활동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
 - ① 후보자 추천
 - ② 설문조사
 - ③ 후보자 추대 모임
- 3) 추천서는 선관위에서 추천 기간 중에 배포한 추천서를 사용한다.

18조 (선거운동 기간)

- 1)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선관위가 정한다.
- 2)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사전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선관위의 판단에 따라 경고 조치한다.

19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 1) 선관위 위원, 사범대 학생회 집행국, 기타 간부 및 대표자, 재적 중이 아닌 자
- 2) 1항의 규정을 위배한 경우 해당 후보에게 경고 1회를 준다.

-3절 선거유세-

20조 (총칙)

유세는 개인유세와 합동유세로 나누며 선거운동 기간에 정한다.

21조 (개인유세)

- 1) 후보자의 개인별 연설회는 강의실, 옥외 연설회와 간담회로 국한한다.(과 및 단과대 학생회실에서의 연설회는 금지한다.)
- 2) 간담회의 형식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지 아니한다.
- 3) 사제 유인물은 종류를 불문하고 선관위의 사전 허가를 거쳐 선관위의 명의를 넣은 후 후보의 이름을 밝히고 배포한다. (단, 타 후보에 대한 비방 등 민주적인 선거 분위기를 해칠 수 있는 사항이 있을 때는 선관위의 결정으로 배포금지를 명할 수 있다.)
- 4) 1, 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후보에게 경고 1회를 준다.

22조 (합동유세)

- 1) 선관위는 2회의 합동유세를 개최할 수 있다.
- 2) 합동유세는 선관위가 정한 날짜에 따른다.
- 3) 합동유세의 순서는 후보 등록 시 추천하여 정한다.
- 4) 공고된 유세 시간 30분 전까지 후보자가 도착하지 않을 경우 유세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 5) 한 후보당 유세시간은 공연, 지지유세, 본 유세를 포함 50분으로 한다. (단, 유세 교체 시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그리고 50분을 넘어서면 주의 1회를, 또 다시 5분이 지나면 경고 1회와 동시에 유세를 중단시킨다.
- 6) 5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해당 후보자에게 징계를 한다.
- 7) 타 후보자의 유세 시 유세를 방해할 수 없다.
- 8) 각 후보자는 선관위가 정하는 형태의 유세에 응할 의무를 가진다.
- 9) 이외의 합동유세 진행은 선관위장이 책임진다.
- 10) 합동유세의 형식은 선거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 서면 각 선거운동 본부와 선관위의 합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

23조 (합동 공청회)

- 1) 합동 공청회는 선관위의 책임 하에 시행된다.
- 2) 후보자는 합동 공청회의 자리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한다. (단, 이를 어길 시 징계가 주어진다.)
- 3) 합동 공청회는 후보자의 소견 발표, 학내 언론사의 질의 및 응답, 참석자의 서면 질의로 구성된다.

5장 참관인

-1절 투표 참관인-

24조 (통칙)

- 1) 투표 참관인은 각 후보를 대신하여 해당 투표소에 배치되어 투표 진행을 참관하는 자를 말한다.

2) 각 후보자는 각 투표소 당 참관인 1인을 배치할 수 있다.

25조 (자격)

- 1) 참관인은 재적생으로 한다.
- 2) 각 후보자는 등록서류와 함께 참관인 명부와 재학증명서 또는 재적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참관인을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투표 첫날 17시까지 교체할 참관인의 명단과 재학 증명서, 또는 재적 증명서를 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 3) 2항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참관인을 배치할 수 없다.

26조 (이의제기)

- 1) 참관인은 각 후보를 대신하여 투표 진행 상황을 참관하여 투표 진행사항에 대하여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2) 투표소 내에서 행한 참관인의 결정에 대해 타 후보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3) 투표소에 참관인이 불참할 경우 선관위와 타 후보 참관인에 의해 결정된 사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7조 (규제 조건)

- 1) 참관인은 투표소에서 선거 운동을 진행 할 수 없다.
- 2) 참관인은 투표소에서 부정행위를 할 경우 선관위와 타 후보 측 참관인이 만장일치로 인정했을 때 선관(부)위원장은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투표 종료까지 투표소에서 참관 자격을 상실한다. 그리고 대신하여 다른 참관인을 둘 수 없다.
- 3) 다음과 같은 경우 참관인의 행위를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 ① 투표를 방해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경우
 - ② 선거 운동 시 특정 후보를 지칭하는 물품을 소지하거나 언동을 하는 경우
 - ③ 기타 선관위에서 부정행위로 결정한 경우

28조 (기타 사항)

- 1) 참관인들은 투표기간 중 투표소를 떠날 수 없으며 특정 후보 측의 참관인 부재 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그 후보 측의 이의를 기각한다.
- 2) 참관인은 투표당일 오전 9시 30분까지 선관위와 함께 투표소 설치를 돕는다.
- 3) 투표소 내에서 참관인이 이의 제기할 경우 선관위원장 입회하에 합의가 이루어 질 때까지 선거권자의 투표를 중지한다. 단,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선관위의 결정에 따른다.
- 4) 참관인이 결정하지 못할 때 대표 참관인이 입회 할 수 있다.

-2절 개표 참관인-

29조(역할)

- 1) 각 후보의 대표 참관인은 투표 2일째 12시까지 개표 참관인 2인을 선정하여 선관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 2) 개표 참관인은 개표 시작 30분전까지 개표장에 도착하지 못할 시 개표참관을 불허한다.
- 3) 개표 참관인은 개표 상황을 참관, 득표의 검산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단, 개표 참관인의 교체는 선관위원장의 허락 하에 한다.)

6장 이의제기

30조 (이의 제기)

- 1) 선거에 관한 이의제기는 각 후보의 투표 및 개표 참관인과 대표 참관인, 후보만이 할 수 있다.
- 2) 선거 운동원은 대표 참관인을 통하여 이의 제기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단, 선거 운동원이 이를 위반하여 선관위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후보자에게 징계를 할 수 있다.)

31조 (이의 제기의 처리)

- 1)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선관위 결정으로 이를 처리할 수 있다.
- 2) 이의제기의 처리는 선관위 과반수 출석과 출석한 인원의 과반수 의결로 처리한다.

7장 징계

-1절 총칙-

32조 (정의)

징계라 함은 규칙 각 조항에 어긋나는 행위와 기타 선관위가 징계 사유라고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해당 후보에게 제재를 가하는 것을 말한다.

33조 (징계의 종류)

- 1) 징계는 시정 명령, 주의, 경고로 나누며 주의 2회는 경고 1회에 해당하고, 경고 3회시에는 후보 자격을 박탈한다.
- 2) 징계의 종류는 임의적 징계와 필요적 징계로 나누며 그 결정은 35조, 36조에 의한다.

34조 (징계의 통보)

- 1) 시정 명령과 주의는 해당 후보에게 구두로 통보하며, 경고는 통보와 함께 이를 공고한다.
- 2) 시정 명령이나 주의를 받은 후에도 해당 후보가 이를 2시간 이내에 시행하지 아니하면 해당 후보에게 주의 1회 또는 경고 1회를 준다.
- 3) 경고를 받은 선본은 경고 공고 게시를 12시간 이내에 경고 사과문과 함께 대자보판에 게시한다.
- 4) 경고의 횟수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재가 가해진다.
 - ① 경고 1회 - 경고 내용을 공개 사과문과 함께 대자보 판에 게시
 - ② 경고 2회 - 경고일 하루(24시간)동안 개별 강의실 유세 금지, 공동유세 시 유세시간 20분 감축
 - ③ 경고 3회 - 해당 후보자 자격 박탈

-2절 징계의 의결-

35조 (임의적 징계)

- 1) 임의적 징계라 함은, 규칙 각 조항에 “징계를 할 수 있다” 또는 “경고 1회를 줄 수 있다” 등으로 규정된 경우와 기타 선관위가 징계 사항으로 결정한 것으로 징계의 결정이 선관위 재량으로 되어 있는 징계를 말한다.
- 2) 임의적 징계의 결정은 선관위 과반수 출석과 출석한 인원의 과반수 의결로 처리한다.

36조 (필요적 징계)

- 1) 필요적 징계라 함은, 규칙 각 조항에 “징계를 한다.” 또는 “경고 1회를 준다.” 등으로 규정된 것으로 징계의 결정은 선관위 재량으로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2항의 단서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 2) 필요적 징계를 선관위원장(혹은 부위원장)이 각 규칙 각 조항에 따라 시행한다. 단, “징계를 한다.” 또는 “주의 1회 또는 경고 1회를 준다.”라고 규정된 경우 선관위의 과반 수 이상 의결에 따라 선관위원장 (혹은 부위원장)이 주의 또는 경고를 준다.

37조 (재심의)

- 1) 대표 참관인의 경고의 징계나 주의 2회로 인하여 경고 1회에 해당하게 될 경우에 한하여 1시간 내로 선관위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 2) 재심은 기존 결정에 대해 1회 더 심의하는 것으로 한다.
- 2) 재심은 6시간 이내에 기존 결정에 대해 1회 더 심의하는 것으로 한다.
- 3) 선관위는 재심의 결과가 나온 즉시 대표 참관인에게 알린다.

8장 투표

38조 (투표일과 투표시간)

- 1) 투표는 2일에 걸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투표시간은 첫째 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둘째 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다.
- 3) 정해진 기간 동안 투표율이 미달 될 경우 선관위의 협의 하에 연장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39조 (투표소)

- 1) 투표소에는 선관위 또는 해당 학과 선관위 홍보물 이외의 유인물 부착을 불허한다.

40조 (투표자의 자격)

- 1) 선거권자는 다음 각 호의 규정된 신분을 확인 하여야 투표할 수 있다.
 - ①학생증
 - ②신분증 및 국가인정 자격증
 - ③선거인 명부에 등록된 자로서 신분을 확인 할 수 있는 자(교학과나 과사무실에 서 학번대조가 가능한 자, 참관인과 선관위원이 만장일치로 공인하는 자,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신분 확인이 가능한 자)
- 2) 위 조건 중 최소 하나 이상 충족 시 투표 할 수 있다.

41조 (투표절차)

- 1)투표권자는 다음의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 ①선관위의 선거인 신분확인(얼굴과 이름, 학번)
 - ②인증번호 배부
 - ③전자투표 실시
- 2)종이투표로 시행되는 경우는 다음의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 ①선관위의 선거인 신분확인(얼굴과 이름, 학번)
 - ②선거인 명부 확인
 - ③투표용지 배부
 - ④투표

42조 (투표소에서의 질서)

- 1)투표소에서는 선관위원, 참관인, 투표자, 후보자 이외에 있을 수 없다.
- 2)투표소에서는 투표행위 이외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 3)선거운동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징계한다.

9장 개표

-1절 총칙-

43조 (개표시간)

개표시간은 중앙 선거관리 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가 결정, 공고한다.

44조 (통칙)

- 1)개표는 선관위 위원만이 할 수 있다.
- 2)표의 유효, 무효표 및 특정후보의 득표기준은 선관위가 정한다.

45조(개표장)

- 1)학교 내의 공개된 장소로 중앙선관위가 결정, 미리 공고하여 알린다.
- 2)개표장에서의 질서 유지는 선관위원장(혹은 부위원장)의 책임아래 수행한다.
- 3)후보자는 개표시간 30분 전에 개표장에 도착하여야 하며, 개표 종료할 때까지 자리를 지켜야 한다.

46조 (개표소)

- 1)개표소는 방청객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설치해야만 한다.
- 2)개표는 선관위 위원과 개표 참관인만이 있을 수 있다.
- 3)개표소에서의 연락은 선관위원장(혹은 부위원장)만이 할 수 있다.

47조 (개표절차)

- 1)전자투표 개표는 다음 순서에 따라 진행한다.
 - ①투표인 수 공고
 - ②개표에 필요한 암호 입력(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암호는 중앙선관위장, 전자투표시행 업체가 가지고 있다.)
 - ③개표
 - ④개표 결과 공개 및 공고
- 2)종이투표 개표는 다음 순서에 따라 진행한다. (가결)
 - ①투표인 수 공고
 - ②투표함 개봉

- ③개표
- ④개표참관인의 재확인 및 득표의 검산
- ⑤후보의 득표 묶음별로 분류 후 투표함에 재투입
- ⑥현황판에 기재

48조 (무효투표)

- 1) 전산 상에 오류가 생긴 표에 한하여 무효로 처리한다.
- 2) 종이투표로 진행할 경우 아래와 같은 투표용지는 무효로 처리한다. (가결)
 - ① 정규의 투표용지가 아닌 경우
 - ② 둘 이상의 난에 표를 한 것
 - ③ 선관위에서 제공한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 ④ 어느 난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경우

49조 (연장투표)

- 1) 전체 투표율이 50%가 안 될 경우 재선거를 실시한다. 단, 선관위와 선본의 합의하에 1일에 한하여 연장 투표를 할 수 있고, 전체투표율이 50%가 안 될 경우 선관위의 의결로 재선거 여부를 결정한다.

10장 당선

50조 (당선의 기준)

- 1)전자투표의 경우 당선은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단, 단선의 경우 찬성과 반대의 득표차가 기권표보다 커야한다. 기계적 오류로 인하여 생긴 무효표는 기권표에 합산한다.)
- 2) 종이투표의 경우에도 당선은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단, 단선의 경우 찬성과 반대의 득표차가 무효표와 기권표의 합보다 커야한다.)
- 3)1위 득표자와 2위 득표자의 득표차이는 전체 투표수의 무효표수를 초과 하여야 한다.

51조 (당선공고)

- 1)개표결과가 최종 확인된 경우에는 선관위원장(혹은 부위원장)은 그 자리에서 당선공고에 관련한 이의 신청을 받고 이의 신청이 없을 경우 동의를 얻어 당선공고를 한다.
- 2)당선공고 이후 24시간 이내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그리고 24시간이 넘을 경우 이의 신청을 받지 않는다.
- 3)이의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선관위는 즉시 소집하여 제반사항을 심의, 의결하여야 한다. (단, 이의 의결은 선관위 재적위원 1/2이상으로 한다.)
- 4)24시간 내 이의신청이 없을 때에는 당선확정공고를 한다.

11장 재투표 및 재선거

52조 (재선거)

49조 1항에 해당할 경우 선거자체가 무효 처리되며, 입후보절차부터 다시 시작한다.

53조 (결선투표)

1위 득표자와 2위 득표자의 득표차가 무효표수 이하일 경우 재투표를 실시한다. 이 경우 무효표와 관계없이 다 득표자가 당선된다.

54조 (재투표, 결선투표절차)

- 1)일주일 이내에 실시한다.
- 2)선거운동은 하지 않는다.

12장 부칙

55조 (선거지침의 제정)

이의신청에 의해 선관위가 심의 결정하며, 본 세칙에 필요한 사항을 수정 보완하여, 선거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단, 그 범위는 본 세칙을 효력을 벗어날 수 없다.)

56조 (선거시행 세칙의 효력발생)

본 시행세칙은 사범대 선관위의 동의를 거쳐 제 46대 사범대 선거에서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